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구단109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지방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예농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제공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B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6. 9. 5.경 광양시 C 잡종지 10,499㎡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관리사무소 1층 424.68㎡, 농산물 공판장 1,686.96㎡)을 신축한 후 위 건물 중 일부는 원고의 본점 사무소로, 나머지 부분은 농산물 공판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5. 6. 15.경 농산물 공판장 1686.96㎡ 부분에 277.79㎡를 증축하여 '로컬푸드직매장(이하 위 매장과 그 대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를 면제하였다.

라. 한편, 전라남도지사는 2018. 6. 11.부터 2018. 6.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산물, 축산물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57,984,940원(각 가산세 포함)과 재산세, 지방교육세 합계 16,546,080원을 추징 및 부과하는 과세예고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5년분부터 2018년분까지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합계 83,661,3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협동조합법과 원고의 정관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에 해당하여 원고의 고유업무라 할 것이고, 로컬푸드직매장 중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 부분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4, 6, 을 제2호증의 3, 5,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직매장은 광양시 D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5. 1. 31. 기준 [redacted]시 D에는 19,049세대, 인구 49,644명이 살고 있는데, 이는 [redacted]시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또한 [redacted]시 D에는 E마트 등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위 법 제6조 제1호)'에 위치하고 있다.

3) 원고의 조합원은 총 472명으로 [redacted]시 D의 전체 인구 중 약 1%에 해당하고, 준조합원은 6,381명이다. 또한 조합원의 로컬푸드직매장 이용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2015년도 14.24%, 2016년도 13.28%, 2017년도 12.03%에 해당한다(준조합원의 이용 비율은 전체 매출액 중 2015년도 15.44%, 2016년도 14.32%, 2017년도 12.98%이다).

4) 로컬푸드직매장 중 농산물 매장, 축산물 매장의 면적은 합계 691.77㎡이고,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의 면적은 합계 824.39㎡이다.

5)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운영요령에 의하면, 공산품 매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목적사업(구매·공급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되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읍·면 지역의 경우 B조합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며(지역 B조합은 일반적으로 읍면에 기반을 두고 경제적·사회적 열위 계층인 농민의 권익 보호를 취지로 설립·운영됨), 도시지역의 경우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현황 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전체 이용자 대비 B조합원 비율, 해당지역 인구 대비 조합원 비율,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B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그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3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로컬푸드직매장 중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redacted]시 D에 위치하고 있고, 광양시 인구는 약 15만 명, 그 중 광양시 D의 인구는 약 5만 명에 이르는데, 원고의 조합원은 472명에 불과하여 광양시 D의 전체 인구 중 1%에도 미치지 못한다.

②[redacted]시 D 내에는 원고의 로컬푸드직매장과 같은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로컬푸드직매장 중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 부분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로컬푸드직매장 내에서 농산물, 축산물 매장의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③ 로컬푸드직매장의 전체 이용객 매출액 중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조합원의 비율은 약 14%에서 1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준조합원의 매출액을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약 29%에서 24%로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이에 대해 원고는 2018년도의 경우 전체 이용객 매출액 중 가족을 포함한 조합원, 준조합원, 다른 B조합의 조합원인 간주조합원의 총 매출액이 52%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가족인지 여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의 정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상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조합원의 사업이용량에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포함시킨 것일 뿐이다).

④ 원고의 로컬푸드직매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동일한 판매조건, 판매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회원등급별로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조합원의 경우 1,000원당 7원, 나머지 일반회원의 경우 1,000원당 5원으로 그 차이가 미미하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로컬푸드직매장 중 수산물 매장, 공산물 매장, 임대매장, 수수료 매장 부분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기보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별지]

지방세 부과처분 목록

처분일자	과세대상	세목	과세액
2018. 8. 2.	광양시 [redacted] 건물 524.91㎡	취득세	743,280
		농어촌특별세	62,240
	광양시 [redacted] 건물 277.79㎡ 증축	취득세	51,859,040
		지방교육세	2,551,780
		농어촌특별세	3,189,730
2018. 8. 3.	광양시 [redacted] 외 23건 (면적 4,749.80㎡) (2015년분)	재산세	2,835,680
		지방교육세	569,670
	광양시 [redacted] 외 21건 (면적 5,710.30㎡) (2016년분)	재산세	3,835,920
		지방교육세	799,200
	광양시 [redacted] 외 21건 (면적 5,710.30㎡) (2017년분)	재산세	4,194,590
		지방교육세	873,360
	광양시 [redacted] (건축물) (2015년분)	재산세	899,210
		지방교육세	179,840
	광양시 [redacted] (건축물) (2016년분)	재산세	869,810
		지방교육세	173,960
	광양시 [redacted] (건축물) (2017년분)	재산세	890,690
		지방교육세	188,380
2018. 9. 10.	광양시 [redacted] 외 22건 (면적 4,045.40㎡) (2018년분)	재산세	8,380,400
		지방교육세	564,540
합계⇒			83,661,3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별지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B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F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G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 구 농업협동조합법(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B조합(이하 이 장에서 "B"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B의 구역에 주소, 거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B에 가입할 수 없다.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B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B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B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 B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B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 B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사업)

① B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B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 제3호마목·사목·아목, 제5호가목·나목, 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B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B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1-19

◆ A조합 정관

제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9조(조합원)

①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원예, 과수 등을 각목의 기준 이상 경영하는 농업인

제15조(준조합원)

조합은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39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1회계연도에 있어서 비조합원(판매사업의 경우는 비농업인)의 사업이용량은 각 사업별로 당해 회계연도 사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가목(농업인의 경우에 한한다)·나목·마목부터 아목까지, 제3호 다목·라목,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이용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 준조합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끝.